

추가약정서

(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OO 상호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_____ (인)

주 소 :

담보제공자 : _____ (인)

주 소 :

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OO상호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**1주택**(분양권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 등 포함)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(또는 그 배우자)가 기존주택 보유 사유가 인정되어 **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**(이하 ‘규제지역’) **소재 주택**(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)을 추가 매수하면서 기존 보유 주택과 규제지역 소재 추가 매수 주택에 채무자의 **가족(가족관계증명서 기준)**이 각각 거주 및 주민등록을 유지(이하 ‘거주’라 함)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매수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.

제 2조 (가족 거주 대상 주택)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**보유**하고 있는 **1건**의 주택과 **신규 취득 주택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기존 보유 주택

종류	소유자	거주자 (세대주)	주소

② 신규 취득 주택

종류	소유자	거주(예정)자 (세대주(예정자))	주소	전입(예정)시기

③ 채무자는 **전입(예정)시기** 및 **저축은행이 정한 주기에** 따라 제2항에 명시된 신규 취득 주택에 채무자의 **가족(가족관계증명서 기준)**의 **거주**를 **증빙**할 수 있는 **자료를 제출**해야 합니다.

제 3조 (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) 채무자의 가족(가족관계증명서 기준)이 제 2조 제 1항 기존 보유 주택 및 제 2조 제 2항 신규 취득 주택에 각각 거주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, 채무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	
---------------	--

제 4조 (거주 대상 주택 거주 의무)

- ① 채무자는 제 2조 제 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 2조 제 1항의 기존 보유 주택에 거주토록 해야 하며, 제 2조 제 1항의 기존 보유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않습니다.
- ② 채무자는 제 2조 제 2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 2조 제 2항의 신규 취득 주택에 거주토록 해야 하며, 제 2조 제 2항의 신규 취득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않습니다.
- ③ 채무자는 제 2조 제 2항에 명시된 신규 취득 주택에 제 3조에 명시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제 2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주택을 처분(명의이전 완료)해야 합니다.

제 5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채무자는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제 2조의 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 2조의 제 1항의 기존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,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
2. 제 2조의 2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 2조의 제 2항의 신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,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
3. 제 2조 제 2항의 신규 취득 주택에 제 3조에 명시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 되었음에도 제 2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주택을 처분(명의 이전 완료)하지 않은 경우
4. 제 2조 제 3항에 따른 거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5. 제 3조에 명시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
6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

제 1항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, 입주권,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
제 6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 사실이 제공됩니다.

1. 제 2조의 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 2조의 제 1항의 기존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,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
2. 제 2조의 2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 2조의 제 2항의 신규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,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
3. 제 2조 제 2항의 신규 취득 주택에 제 3조에 명시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 되었음에도 제 2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주택을 처분(명의 이전 완료)하지 않은 경우
4. 제 2조 제 3항에 따른 거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5. 제 3조에 명시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
6.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 제 1항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, 입주권,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